

# 정관 시행세칙

한국스카우트연맹

# 정관 시행세칙

(제21차 개정 2022. 2. 22.)

## 제1장 총 칙

제1조(사업) (삭제 84. 3. 30.)

## 제2장 회 원

제2조(법인회비) ① 정관 제6조 규정의 본 연맹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09. 11. 13.)

1. (삭제 09. 11. 13.)

2. (삭제 09. 11. 13.)

3. (삭제 09. 11. 13.)

② (삭제 89. 3. 24.)

제3조(회비의 유효기간) ① 제2조의 회비에 따라 연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09. 11. 13.)

② 매년 중간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유효기간은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09. 11. 13.)

제4조(회원증) 제2조의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09. 11. 13.)

##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기여금) 본 연맹의 정관 및 헌장에 규정된 임원은 제2조의 회비를 납입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09. 11. 13.)

제6조(지방·특수연맹을 대표하는 이사 선임) (삭제 12. 2. 26.)

제7조(임기의 계산) 지방·특수연맹 대표 중앙이사의 임기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09. 11. 13.)

1. 현재 이사가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격할 날로부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98. 3. 27.)

2. 정관 제11조에 의한 선출 및 동 제15조에 의한 보선의 경우 선임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의 의하여 총재가 그 정당성을 확인하였을 때에 한하여 전임자의 자격이 상실된 다음 날로부터 그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3. (삭제 04. 3. 25.)

제8조(최초 임원의 임기 결정) 정관 제12조에 의한 최초의 임원의 임기 결정은 임원의 선임이 확인된 후 최초의 이사회에서 다음에 의하여 그 임기를 결정한다.

1. 총재, 부총재, 중앙치프커미셔너(중앙훈육위원장), 국제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장),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2. 2. 22.)

2. 전 1호 이외의 이사는 임기를 4년과 2년으로 하되 전 1호를 포함한 전 이사수의 2분의 1은 2년이 되게 한다.

제9조(해임) 정관 제16조에 의한 임원의 해임은 헌장 제35조 규정의 중앙명예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의하고 전국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무 및 권한) 1. 정관 제17조 제2호 전단(□□)에 의한 직무대리의 순위는 정기 전국총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7. 2. 10.)

2. 이사회는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활동을 평가한다. (신설 17. 2. 10.)

제11조(임원의 구성) 정관 제11조에 근거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구성한다.

1. 임원은 30세 이하인 자가 최소 1명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2.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임원을 구성한다. (신설 17. 2. 10.)

## 제4장 회 의

### 제1절 전국총회

제12조(개최 절차) ① 정관 제24조에 의한 정기 전국총회의 개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전국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1개월 전에 각 지방·특수연맹에 서면으로 예비 통보한다. (개정 09. 11. 13.)

2. 각 지방·특수연맹은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최한 당해 지방·특수연맹의 정기 지방이사회에서 미리 선출된 대의원 및 각 대의원이 정기 전국총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을 종합하고 당해 지방·특수연맹 등록신청서와 회의록을

첨부하여 전호에 의하여 통보된 정기 전국총회일 3주일 전에 중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3. 사무총장은 전호의 의안을 종합 정리하고 일정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정기 전국총회 상정 의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4. 총재는 확정된 의안을 기재한 정기 전국총회 소집 통지서를 전국총회일 1주일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방·특수연맹을 통하여 각 대의원에게 발송한다. (개정 09. 11. 13.)

② 임시 전국총회의 개최 절차는 전항에 준한다.

제13조(대의원 자격의 확정) ① 전국총회의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1. 지방·특수연맹을 대표하는 대의원 (개정 09. 11. 13.)

각 지방이사회가 당해 지방총회일 현재 재임 중인 임원중 정관 제25조제1호에 의한 인수의 대의원으로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중앙본부에 보고한 인사로 한다. (개정 09. 11. 13.)

2. 법인을 대표하는 대의원

본 연맹의 이사 및 감사 전원

3. 중앙본부를 대표하는 대의원

전국총회일 현재 재임 중인 헌장 제21조 중앙본부 임원 중 전호 이외의 임원 전원과 로버스카우트 중앙협의회 회장 (개정 09. 11. 13.)

다만, 동일인이 2개 이내의 직을 겸임하고 있을 때에는 겸임에 의한 대의권은 없다.

② 전 항의 대의원은 그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익년도 정기 전국총회의 대의원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계속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임시 전국총회의 경우 결격사유로 대의원의 교체가 필요한 지방·특수연맹에 있어서는 지방이사회에서 이동(□□) 대의원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의원 전원과 이동사유를 명기한 보고서를 전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제14조(신임장) 전국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으로서 지구연합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및 지방·특수연맹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당해 지방·특수연맹 연맹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중앙본부 및 법인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총재가 발행하는 신임장을 각각 지참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제15조(위임 출석) 전국총회의 대의원이 정관 제39조에 의하여 출석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전국총회의 다른 대의원에 한하여 이를 위임하여야 한다.

## 제2절 이사회

제16조(서면회의) 정관 제32조의 서면회의는 단순히 가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안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성립 및 의결) ① (삭제 89. 3. 24.)

② 정관 제34조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구성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89. 3. 24.)

## 제5장 지원단체

제18조(설립) 정관 제35조 규정의 지원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설립한다.

1. 본 운동의 취지를 이해, 지지하는 독지가나 유지단체(□□□□)가 회사(□□) 한 상당한 재산이 있어 기본재산 형성이 용이한 경우
2. (삭제 84. 3. 30.)

제19조(설립위원) 전조에 의하여 지원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선임, 위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위원의 과반수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제20조(정관 작성) 설립위원은 선임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09. 11. 13.)

1. 그 명칭 및 목적에 스카우트 지원단체임을 명시한다. (개정 01. 12. 29.)
2.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본 연맹의 사업을 위하여 보조한다.
3. 이사의 3분의 1은 본 연맹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84. 3. 30.)
4.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 (개정 84. 3. 30.)

제21조 (삭제 84. 3. 30.)

##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기본재산) ① 정관 제36조제2항의 기본재산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이를 매도, 양도, 처분할 수 없다. (개정 03. 3. 20.)

③ 지방·특수연맹이 관리하는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려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결의를 얻어 전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4. 2. 27.)

④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의로 기본재산을 관리 유지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지방·특수연맹의 기본재산을 당해 지방·특수연맹에 위임하여 관리 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⑤ 각 지방·특수연맹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당해 지방·특수연맹의 자원에 충당한다. (개정 09. 11. 13.)

제23조(경리) ① 본 연맹의 경리는 다음과 같이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일반 업무에 관한 일반회계
2. 기타 특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② 감사는 매년마다 업무 및 회계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1. 이 시행세칙에 관한 개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전국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정 및 개정 연월일

1968년	4월	13일	제정	
1971년	3월	20일	1차	개정
1976년	3월	20일	2차	"
1977년	3월	26일	3차	"
1978년	4월	4일	4차	"
1984년	3월	20일	5차	"
1985년	3월	27일	6차	"
1989년	3월	24일	7차	"
1991년	3월	22일	8차	"
1993년	3월	30일	9차	"
1995년	3월	29일	10차	"
1996년	3월	29일	11차	"
1998년	3월	27일	12차	"
2001년	12월	29일	13차	"
2003년	3월	20일	14차	"
2004년	3월	25일	15차	"
2005년	3월	24일	16차	"
2009년	11월	13일	17차	"
2012년	2월	26일	18차	"
2014년	2월	27일	19차	"
2017년	2월	10일	20차	"
2022년	2월	22일	21차	"